

연금 플랜 (Defined Benefit Pension Plan)

연금 플랜 (Defined Benefit Pension Plan) 은 가입자의 생존 기간 동안 정해진 공식에 따라 확정된 연금을 매월 지급합니다.

플랜 운영 방식

연금은 연금 크레딧 (Pension Credits) 을 적립하는 기간이 길수록 증가합니다. 매년 연금 플랜 가입자들을 위해 아래 금액 중 더 큰 연금 크레딧이 적립됩니다.

- 해당 연도의 연금 가입 기준액 (Pension Participation Basis) 의 1.25%, 또는
- 해당 급여 중앙값 (Median Salary) 의 1.25% (Part time 가입자인 경우 비례 계산).

연금 가입 기준액이란 실제 급여 또는 해당 급여 중앙값의 25% 중 더 큰 금액을 의미하며, 미 국세청 (IRS) 기준 최대한도액인 \$290,000 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금은 연금국 (Board of Pensions) 이 제공하는 주기적인 경험 분배 (Experience Apportionments 참고)을 통해서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는 연금 부담금을 따로 내지 않습니다. 교회/고용기관의 부담금과 투자수익으로 연금 급여 비용을 충당합니다.

연금액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은 가입자의 총 적립된 연금 크레딧, 퇴직 연령, 그리고 가입자가 선택한 연금 지급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금액 추산

은퇴 시점의 연금액을 추산하기 위해, Benefits Connect 에 있는 연금 추산기 (pension estimator) 를 활용하면 추정 연금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권 (Vesting)

연금 수령권이란 연금 받을 자격을 뜻하는 용어로서 사임 또는 퇴직하더라도 해당 연금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가입자가 Word and Sacrament 사역자일 경우, 해당 플랜 가입과 함께 수령권이 주어집니다. 신학교 풀타임 재학 기간도 수급권 기간에 포함됩니다.

위임 목회자 또는 사역자가 아닌 일반 직원 가입자일 경우, 3 년간 유효한 시무를 완료하거나 65 세가 되었을 때 적립된 연금 크레딧을 100% 받을 수 있는 수령권이 주어집니다. 교회/고용기관이 해당 플랜에서 탈퇴하거나, 확정급여형 연금 플랜이 종료되면 그 즉시 가입자는 연금수령권을 갖게 됩니다.

연금 플랜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자격 요건을 갖춘 교회/고용기관에 최소 주당 20 시간 이상 시무한 경우, 확정급여형 연금 플랜에 대한 연금 수령권 기간으로 포함됩니다.

경험 분배

경험적 배분 (Experience Apportionments) 이란 재량적, 영구적 연금 크레딧 또는 연금 수령액의 증가분으로, 연금국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지급되는 무상 연금 증액 혜택입니다.

연금 급여 신청

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은퇴 45 일 이전까지 작성된 은퇴 연금 신청서가 연금국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연금국에 800-773-7752 (800-PRESPLAN) 으로 전화하여 은퇴 연금 신청서를 요청하십시오.

지급 방법 선택

연금 신청 시 여러 지급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적 (Normal) 지급 형태는 조인트 및 50% 유족 연금 (Joint & 50% Survivor Pension) 입니다. 이 지급 방법은 가입자가 65 세에 퇴직할 경우, 적립된 연금 크레딧을 12 로 나눈 금액을 평생 매월 지급합니다. 가입자 사망 시에는 생존 배우자(혹은 적격 유족)가 연금 크레딧의 50% 에



연금 플랜 (Defined Benefit Pension Plan)

해당하는 금액을
평생 동안 령하게 됩니다.

다른 가능한 조인트 및 유족 옵션으로 가입자가 평생 매월 받는 연금액을 줄이거나 조정함으로써 가입자 사망 후 배우자(가입자가 사망하기 전 혼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가 수령하게 될 연금액을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회 보장 등급 조정 (Social Security Leveling) 옵션은 가입자가 55세에서 62세 사이에 은퇴할 경우 사회보장급여를 받기 전후에 일정한 수준의 총소득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더 상세한 정보를 원하실 경우, pensions.org 를 참고하십시오.

연금 지급 시기

확정급여형 연금 플랜은 조기 퇴직, 65 세 퇴직, 65 세 이후 퇴직 시 아래와 같이 연금을 지급합니다.

- 정년 퇴직 (65 세): 연금은 적립된 총 연금 크레딧과 같습니다.
- 조기 퇴직 (55 세~64 세): 연금 수령 기간이 더 길어지게 되므로 연금액이 감소됩니다.
- 정년 이후 퇴직 (65 세 이후): 연금액이 아래 두 가지 이유로 더 증가합니다. 현역으로 사역하는 동안 계속해 적립되므로 연금 크레딧이 증가되고, 65 세 이후에 연금을 받게 되면 연금 크레딧에 추가적인 요소가 적용됩니다(최대 70 세까지).

가입자가 연금 수령권이 있는 경우, 55 세 이후 사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누적된 연금 크레딧이 특정 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에도 확정급여형 연금 플랜은 연금을 지급합니다. 더 상세한 정보를 원하실 경우, pensions.org 를 참고하십시오.

가입

교회/고용기관이 목회자/직원을 연금국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일단 가입되면, 가입자가 따로 취해야 할 조치는 없습니다.

비용

교회/고용기관이 연금 플랜 가입 부담금 전액을 책임져야 합니다. 가입자는 부담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습니다.

추가 정보

확정급여형 연금 플랜에 대한 더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pensions.org/members 를 참고하십시오. 질문이 있는 경우, 연금국 전화 800-773-7752 번 (800-PRESPLAN) 으로 연락하십시오.

은퇴 후 생활비는 얼마나 될까요?

연금액이 은퇴 후 매월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까? 퇴직 저축 플랜 (Retirement Savings Plan)을 사용해 연금을 보충할 수 있습니까?

추가 정보는?

더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pensions.org/members 를 참고하십시오.

은퇴할 준비가 되었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연금 급여에 대한 자세한 정보나 연금 신청서를 원하시면 연금국으로 전화하십시오.

어떻게 가입합니까?

교회/고용기관에서 가입시킵니다. 목회자/직원은 어떤 조치도 취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플랜의 급여 및 제한에 대한 전체적 설명이 아닙니다. 여기에 제시된 정보와 Presbyterian Church (미국)의 베네핏 플랜 (Benefits Plan) 조항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플랜 약관이 적용됩니다. 플랜 서류의 사본을 요청하려면 pensions.org 를 방문하거나 800-773-7752 번 (800-PRESPLAN) 으로 연금국에 전화하십시오.